#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

2017. 11. 13.

## 금 융 위 원 회

	목 차		
		-	
I . 사회적경제의	개념 및	지원체계	·· 1
Ⅱ. 사회적금융의	개념ㆍ현	황	3
Ⅲ. 사회적금융 ㅎ	H외사례 ··		·· 4
IV. 사회적금융 힅	발성화 추정	진방향	·· 6

## I.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

- □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**협력·자조**를 **바탕**으로 재화·용역의 생산·판매를 통해 **사회적 가치를 창출**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
-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, **연대와 협력**, **민주적 운영**을 통해 **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**하는 점에서 차이
- 고용 창출・안정 및 유휴인력 활용에 기여하고, 소득양극화, 복지사각지대 등 사회문제에 대응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
- □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·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·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
-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,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
  사회적 경제기업을 정의하여 지원을 실시증
- 정부·공공기관을 중심으로 **정책자금·보증**을 지원하고 **법인세** 등 가중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을 부여

#### <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·현황>

구 분 (시 행)	사회적기업 (2007년)	협동조합 (2012년)	자활기업 (2012년)	마을기업 (2010년)
소관부치	고용노동부	기획재정부	보건복지부	행정안전부
목 적	취약계층 고용 창출, 서비스 제공	조합원 권익 향상, 지역 사회 공헌	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	지역환경 개선, 지역공동체 활성화
근거법률	사회적기업육성법	협동조합기본법	기초생활보장법	행안부 지침
개수('16末	1,7137#	10,640개	1,149개	1,446개

- □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.18일 관계부처 합동의 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・발표
- 금융(금융위), 인력양성(고용부), 지자체 역할제고(행안부) 등 **분야별** 중자기 개선과제를 담당부처별로 심충검토하여 12월중 발표 예정
- ※ [참고] 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의 목표 및 발전전략

- 1 -

## 참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

- ◇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-Track 발전전략 마련
- ① (인프라 구축)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
- ② (진출분야 확대)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

#### 시회적 기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의 목표 역량 제고 성장동력 확보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통합 지원체계 및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정책방향 확립 주거환경 분야 진출 \*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 \*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문화예술 분야 진출 과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판로확대 지원 \* 공공조달 확대 및 판로개척 소셜벤처 분야 진출 인력양성 체계 강화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추진 체계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

## II. 사회적금융의 개념 · 현황

- □ 사회적 금융(Social Finance)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
- **정부보조, 민간기부금**을 통한 자금지원부터 환경·사회·지배 구조(ESG)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**사회책임투자**(SRI)까지 포괄
- 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에서는 **공적재원**과 **민간투자** 등을 활용, 금융의 원리에 따른 **대출**(보증), **투자**형식의 지원에 중점

#### <사회적 금융의 위치>



- □ 우리나라의 경우, 정부재정·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, 보증 등 단순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
-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\*, **금융** 시장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
- \* 사회적기업 자금조달(15, 고용부): 정부보조금(51.4%), 특수관계인 차입(43.6%) 협동조합(2차 실태조사): 출자금(70.8%), 부채(29.2%), 금융기관 대출경험(9.2%)

#### <사회적금융 지원 현황(예시)>

- (미소금융) 4개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운영자금을 저리 대출(2.0~4.5%, 5년 이내, '16년 9.5억원)
- ② (중기 정책자금)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저리대출('16년 82억원)
- ❸ (신보·지신보 보증)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특례보증 제공(신보의 경우 1억원 한도, 100% 보증, '16년 46억원 보증 신규 공급)
- ④ (모태펀드) 고용부가 재정을 모태펀드에 출자, 민간자금과 매칭으로 予펀드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(182억원 규모 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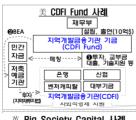
- 3 -

## Ⅲ. 사회적금융 해외사례

- ◈ 미국·일본·영국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(휴면예금)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
- ◈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

### 1. 정부재정·공공재원(휴면예금) 중심의 지원체계

- ① (美) 재정으로 기금(CDFI Fund)을 조성, 기금이 지역개발금융기관 (CDFI)을 통해 **간접 지원** ('95~)
  - \* ① CDFI 프로그램: CDFI를 통해 교부금, 대출, 지분투자 등 집행, 2 BEA(Bank Enterprise Award):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 등
- ② (英) 휴면예금과 대형은행 출연금 으로 Big Society Capital\*을 조성, 사회적금융 중개기관(SIFI)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투융자 (\*12~)
  - SIFI에 자금 제공, ② 사회적 투자상품 개발, 🚯 보증 등 他투자자 참여 유도. ₫ 투자 조건으로 사회적 영향평가 의무화
- ③ (日)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 **공익활동을 지원**하는 체계를 마럼
  - \* '16년 휴면예금법 제정, '18년부터 지원 활동에 착수할 예정





자금조성

ㅇㅇ 지방 NPO .... 자금조성 · 대출 단체 방크 ... 작자 각독

심의회(자문)

#### 2.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체계

#### 가. 협동조합 금융 방식

- □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·스페인 등에서는 **신용협동조합**(협동 조합은행), **협동조합 연대기금**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
- ① (加) 데잘댕그룹 은 연대경제금고(Caisse d'economie solidaire, '71)를 설립하여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금융 역할을 수행
  - \*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 금고간 연합·합병 보험·신탁 등 사업 다각화(40's~) 및 금융그룹화('90s~)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,584억\$의 신협금융그룹
- ② (西)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(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협, '59)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

## 나. 사회적거래소 크라우드펀딩 방식

- □ 투자자(기부자)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 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과 유사한 사회적거래소 도존재
  - \* BVS&A(브라질, '03), SASIX(남아공, '06), IIX(싱가폴, '11) 등

#### 다. 사회적은행 방식

- □ 네덜란드·이탈리아 등에서는 **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**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유자하는 사회적은행이 등장
- ① (蘭) 트리오도스은행(Triodos Bank)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('80),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, 환경기업에 대출 등 지원
  - \* 총자산 91억€, 예수금 80억€, 대출 57억€, 세전이익 0.4억€(16末 기준)
- ② (伊) 방카에티카(Banca Popolare Ethica, 신협, '99)은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

- 5 -

## IV.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

- 사회적금융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점진적인 금융지원 확대 추진
- 정부·공공부문 중심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**사회적금융 모범** 사례(Best Practice)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**민간에 확산 유도**
- ❷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・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, 보증뿐만 아니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
- ❸ 양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심사·평가 체계 등 실제 지원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
- □ 현재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미소 금융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능 강화 추진
  -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, 지원 이후
    사후 관리도 체계화
- 자금의 공급채널인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확대와 함께 기관 선정의 객관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
-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 자금의 원활히 수급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능을 대폭 확대
- 신보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**사회적경제 지원계정**을 신설하여 **향후 5년내 최대 5,000억원까지 보증공급**
- 보증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확대, 기업별 보증 한도 확대 및
  보증료 감면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

- ③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되어 창업·성장을 지원하는 **성장사다리 팬드의 출자**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**사회투자펀드**를 조성
- '17년중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,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향후
  5년간 최대 1,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을 추진
- 투자자의 **투자 유인**과 **사회적기업 지원**이라는 가치 추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**포트폴리오·성과보수 등 설계**
- ④ 다수·소액 투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**사회적기업에 유입**될 수 있도록 **크라우드펀딩 투자 기반 조성**
-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 를 개설・운영하고 크라우드편당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(창업 7년 이내 제한 → 폐지)
  - \*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펀딩 진행상황 등 정보 게재
- 5 공동유대에 기반한 신협을 협동조합 등 **사회적경제기업**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
-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 을
  통해 신협의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
  - \* 조합원·비조합원 대상 대출만 허용 → 조합원·비조합원 대상 출자도 허용
- 아 사회적경제기업이 신협을 통해 홍보 및 판로개최 등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 편의 제고방안을 강구
- 6 사회적경제기업의 **사회·재무 성과가 균형있게 고려**될 수 있도록 대출·출자시 **심사·평가 기법 개선** (관계기관 공통)
- →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·관계기관 협의 등을통해 방안을 구체화하여 12월중「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」발표